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 질 수 있습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칸서스 튠튼채권 탄탄공모주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현재 기준)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하며,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임의해지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칸서스 튠튼채권 탄탄공모주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현재 기준)으로 전환(합병, 모자형 전환 등)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요약정보 -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투자운용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 펀드용어의 정리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3.07.11.)
칸서스 튠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펀드 코드:BO720]

| 투자 위험 등급 6등급 (매우낮은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칸서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자산총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국내 채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요약보고서는 '칸서스 튠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채권 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으로서 자산총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그 외에 단기 기업어음 및 금융채에 40%이하, 채권파생상품에 10% 이하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 | | | | | |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 | | | | | | | | | |
| 투자비용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단위:%)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
| | 클래스 | 판매 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 ·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A | 0.25 | 0.16 | 0.05 | 0.25 | 0.17 | 43 | 61 | 81 | 123 | 248 |
| C | 0 | 0.36 | 0.25 | 0.35 | 0.37 | 38 | 79 | 121 | 212 | 482 | |
| <p>(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 · 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주 2) 종류 A형과 C형의 총 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4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p>(주 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해당 목차 및</p> | | | | | | | | | | | |

페이지 포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기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2022.07.12~ 2023.07.11 | 2021.07.12~ 2023.07.11 | 2020.07.12~ 2023.07.11 | 2018.07.12~ 2023.07.11 | 2017.07.12~ 2023.07.11 |
| 펀드전체 | 5.47 | 3.25 | 2.76 | 2.71 | 2.61 |
| 비교지수 | 3.68 | 2.17 | 1.73 | 1.81 | 1.81 |
| 수익률변동성(%) | 0.51 | 0.49 | 0.43 | 0.39 | 0.36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5.30 | 3.09 | 2.59 | 2.54 | 2.45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5.32 | 3.11 | 2.61 | 2.56 | 2.4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5.09 | 2.88 | 2.39 | 2.34 | 2.2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5.22 | 3.02 | 2.52 | 2.47 | 2.3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 5.25 | 3.04 | - | - | 2.72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 5.29 | 3.08 | 2.59 | - | 2.56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 | 5.24 | 3.03 | - | - | 0.88 |

(주 1) 비교지수 : (0.95 * [KIS종합 3M-01Y]) + (0.05 * [KIS_CALL지수])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 | | | | 운용경력년수 |
|-----|------|--------|----------|----------|-------------------------|-------|-------|-------|--------|
| | | |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규모(억원)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최근 2년 | |
| 고호진 | 1973 | 책임(상무) | 17 | 2,029 | 1.27 | 1.59 | 1.27 | 1.59 | 24.1 |

※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 종류 | 세부구분 | 주요내용 |
|---------|-----------|---|
| 투자신탁 위험 | 투자원금손실 위험 | 관련법령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개별위험 | 발행회사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채권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시장위험 | 이자율변동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채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회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원본 손실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신용위험 | 부도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권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 | | 신용등급 하락위험 |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 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해지위험 | 투자신탁 해지위험 | 설정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매입방법 | - 17시 이전: 제2영업일(D+1)의 기준가격 적용 - 17시 경과 후: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 적용 | 환매방법 | - 17시 이전: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지급 -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D+3)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지급 |
| 환매수수료 | -환매 수수료 없음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
| 과세 |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 |

| | 종합과세 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 칸서스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2077-5000/ 인터넷 홈페이지:www.consus.co.kr | | | | | | | | | | | | | | | | | |
| 모집기간 |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가능 | 모집, 매출 총액 | 10조좌 | | | | | | | | | | | | | | | |
| 효력발생일 | 2023년 08월 17일 | 존속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 | | | | | | | | | |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 | | | | | | | | | | |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 <th colspan="2">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판매 수수료</td> <td>수수료 선취(A)</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td> </tr> <tr> <td>수수료 미징구(C)</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 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td> </tr> <tr> <td rowspan="3">판매 경로</td> <td>온라인 (e)</td> <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오프라인</td> <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 </tr> <tr> <td>온라인 슈퍼(S)</td> <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td> </tr> </tbody> </table> | | | 종류(Class)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 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 |
| | 종류(Class)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 | | | | | | | | | | | | | | |
| 수수료 미징구(C) |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 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 | | | | | | | | | | | | | | | |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 | | | | | | | | | | | |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보수체감 (CDSC) | 되지 않습니다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 무권유 저비용(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개인연금 (P1)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 (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고액 (I)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펀드 등 (F) | 펀드 및 기관투자자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 (W) |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consu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consus.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칸서스 튠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BO720) | | | | | |
|---------------------------------|--------------------------------|----------------|-----|-----------------------------------|----------------|
| No. | 종류(Class)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No. | 종류(Class)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1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BO721 | 8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100억이상 적격투자자(C-i2) | BO728 |
| 2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 BO722 | 9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 BO729 |
| 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BO723 | 1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 CE460 |
| 4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BO724 | 1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 BO730 |
| 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BO725 | 1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 | CE461 |
| 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BO726 | 13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BO732 |
| 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50이상 적격투자자(C-i) | BO727 | - | - |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형(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미해당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

※ 모집(판매)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판매)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을 합니다.

※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 |
|---------------|--|
| 모집(판매)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판매)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모집(판매) 합니다. [모집개시일:2017.05.05] |
| 모집(판매)장소 | 판매회사의 본·지점 등 영업점 |
| 모집(판매)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판매)합니다. |

- ※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판매)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칸서스 튠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BO720) | | | | | |
|---------------------------------|------------------------------------|----------------|-----|-----------------------------------|----------------|
| No. | 종류(Class)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No. | 종류(Class)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1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BO721 | 8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100억이상 적격투자자(C-i2) | BO728 |
| 2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 BO722 | 9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 | BO729 |
| 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BO723 | 1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 직연금(C-Pe) | CE460 |
| 4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 e) | BO724 | 1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1) | BO730 |
| 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 BO725 | 1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 인연금(C-P1e) | CE461 |
| 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C-f) | BO726 | 13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 권유저비용(AG) | BO732 |
| 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50이상 적격투자자(C-i) | BO727 | - | - |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일자 | 내용 |
|-------------|-------------------------------------|
| 2017.07.11. | 최초 설정 |
| 2018.04.17. | 부책임용인력의 변경 |
| 2018.08.27. | 클래스 추가 신설(퇴직 및 개인연금 클래스) |
| 2019.05.24. | 투자설명서 개정(부책임용인력의 삭제) |
| 2019.09.10. | 투자설명서 정기개정(부책임용인력의 추가) |
| 2019.09.25. | 투자설명서 개정(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 2020.01.03. | 투자설명서 개정(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등 자료갱신) |
| 2020.08.27. |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
| 2021.02.19. | 투자설명서 개정(부책임용인력의 삭제) |
| 2021.03.25. | 투자설명서 개정(투자위험등급 변경) |
| 2021.06.08. | 투자설명서 개정(일반사무관리회사변경, 고난도펀드 해당여부 반영) |
| 2021.08.26. |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
| 2022.05.27 | 투자설명서 개정(책임용인력의 변경) |

| | |
|-------------|--------------------------------|
| 2022.09.06. |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
| 2023.01.31. | 투자설명서 개정(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 2023.04.27. | 투자설명서 개정(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 2023.07.04. | 투자설명서 개정(운용전문인력의 변경_부책임용인력 삭제) |
| 2023.08.17. |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사명 | 칸서스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SK증권빌딩 10층 ☎ 02-2077-5000 |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운용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 | | | | 운용경력 년수 |
|-----|------|------------|-------------|--------------|----------------------------|----------|----------|----------|------------|
| | | |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규모 (억원)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최근 2년 | |
| 고호진 | 1973 | 책임 (상무) | 17 | 2,029 | 1.27 | 1.59 | 1.27 | 1.59 | 24.1 |

| 성명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고호진 | 2023.03~현재 칸서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2017.06~2023.02 현대차증권, 채권운용팀장, 원화/외화채권 및 FX 운용 2013.09~2017.05 SK증권, FICC파생팀장, 구조화 상품 세일즈 & 운용, 부장 2012.09~2013.09 현대증권, FICC운용부, FICC prop&구조화상품 운용, 팀장 2009.12~2012.09 신영증권, FICC부 2008.03~2009.11 우리투자증권, FICC Prop팀, 국내/외 이자율, FX 2006.05~2008.03 푸르덴셜 자산운용, 해외채권운용팀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 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 변경 내역

| 구분 | 성명 | 운용기간 |
|----------|-----|-------------------------|
| 책임운용전문인력 | 신화철 | 2017.04.19 - 2018.12.17 |
| | 민영기 | 2018.12.18 - 2022.05.27 |
| | 양민규 | 2023.01.31 - 2023.04.26 |
| | 고호진 | 2023.04.27 - 현재 |
| 부책임용전문인력 | 박명호 | 2017.04.19 - 2018.04.20 |
| | 박성은 | 2018.08.27 - 2019.05.24 |
| | 이동진 | 2019.09.10 - 2021.02.18 |
| | 양민규 | 2021.02.19 - 2023.01.30 |
| | 양민규 | 2023.04.27 - 2023.07.03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보수체감 (CDSC)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 무권유 저비용(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개인연금 (P1)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 (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고액 (I)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펀드 등 (F) | 펀드 및 기관투자자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 (W) | Wrap Account용(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6개월 내외 국내 채권 이외에 A2- 이상의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으로서 수익자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1 | 채권 | 60% 이상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2 |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3 | 어음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합니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4 |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위험평가액의 10% 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

| | | | |
|----|-------------------|--------------|---|
| 6 | 집합투자증권등 | 40% 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9조제21항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 7 | 증권의 대여 | 증권총액의 50% 이하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한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합니다. |
| 8 | 증권의 차입 | 20%이하 |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합니다. |
| 9 | 환매조건부매도 |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합니다. |
| 10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
| 11 | 단기대출 | - | 법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합니다. |
| 12 | 금융기관에의 예치 | -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6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신탁계약서 제16조제5호, 제17조제2호 가목 및 나목, 제3호 본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투자제한의 내용 | 적용유예 |
|----|----------|------|
|----|----------|------|

| | | |
|-----------------|---|----------------------|
| <p>이해관계인 투자</p>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p> | |
| <p>동일종목투자</p>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 <p>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p> |
| <p>계열회사 증권</p> | <p>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 |
| <p>파생상품투자</p> | <p>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 <p>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p> |

| | | |
|----------------|---|---------------------|
|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집합투자증권 |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
| |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동일법인발행 지분증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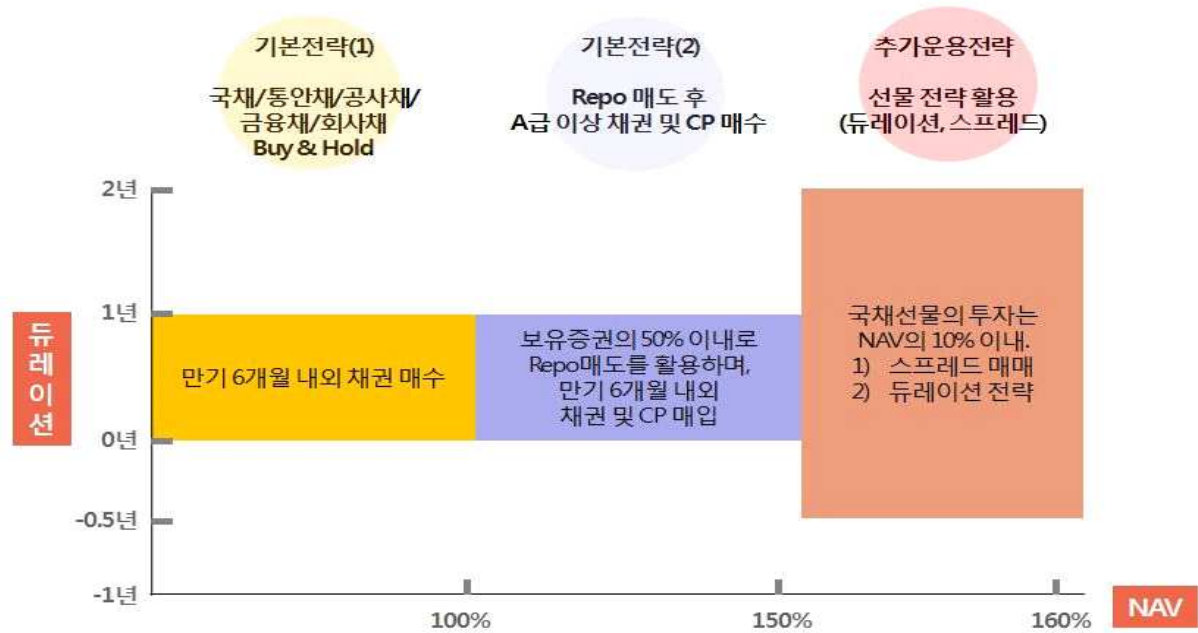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6개월 내외 국내 채권 이외에 A2- 이상의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으로서 수익자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고 통안채 등 국내 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신탁재산의 50% 이하 수준으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후 6개월 미만의 우량 신용등급의 단기 사채 및 유동성, 채권관련파생상품에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아래 세 경우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서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칸서스 튠튼채권 탄탄공모주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현재 기준)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할 예정이며,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하거나 신탁계약서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칸서스 튠튼채권 탄탄공모주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현재 기준)으로 전환(합병, 모자형 전환 등)할 예정입니다.

- 1)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 2)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3M~1Y) 95% + KIS Call 지수 5%

👁️ **비교지수에 대한 설명**

KIS 종합채권지수(3M~1Y) : KIS채권평가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채권지수로서 정식 명칭은 "KIS 단기 종합채권지수 중 국내 채권 만기 3개월~1년"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대상이 1년 이하 만기인 국내 채권이므로, 종합채권지수 중 KIS종합채권지수 3M ~ 1년 이하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지수는 이 투자신탁이 부담해야 할 금리 및 신용리스크와 유사한 위험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평가지수라고 생각합니다.

KIS Call 지수 : KIS채권평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

KIS채권평가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채권지수로서 국내 Money Market Index 중 하나로 국내 자금 시장을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수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국내 채권 및 유동성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으로서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 지수가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기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집

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채권운용전략



- ①국공채 및 통안채, 금융채, 공사채 등 만기구조에 부합하는 채권에 대한 Buy&Hold
 - 금리위험을 회피함으로써 채권부문 수익률의 안정성 추구
 - 신용위험에 의한 펀드 수익률 변동위험을 최소화하는 투자전략
 - 내부 신용분석에 의한 Universe를 지정하고 이에 한해 투자
- ②만기 6개월 이내 채권 보유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후, A2- 등급 이상의 단기채권 및 기업어음(CP)을 매수하여 추가 이익 실현
- ③만기 6개월 이내 국공채 중에서 Rolling-down 효과가 큰 종목 편입하여 수익 제고
 - ※ Rolling-down 효과는 채권만기가 짧아지면서 금리가 하락하여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
- ④국채선물 스프레드 매매(듀레이션 전략)로 금리 및 변동성을 최소화 하는 전략
 - ※ **상기 채권운용전략은 국내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파생상품 투자전략

-채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국채 선물 매수/매도를 통해 매매차익 추구 목적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 ①듀레이션 전략
 - 금리의 추세적 상승 시 국채선물 매도를 이용해 듀레이션을 축소함으로써 가격 하락을 방어하고 금리 변동성을 최소화 하는 전략(중립전략)
 - 과도한 금리 변동 및 추세적인 변화가 확인될 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듀레이션 확대 및 축소하는 전략 시
- ②스프레드 전략
 - 만기 구간별 종목 간 수익률(금리)의 확대 및 축소 된 시점을 파악하여 매매 하는 전략
 -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Curve Flattening):단기 선물 매도/장기 선물 매수
 -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Curve Steepening):단기 선물 매수/장기 선물 매도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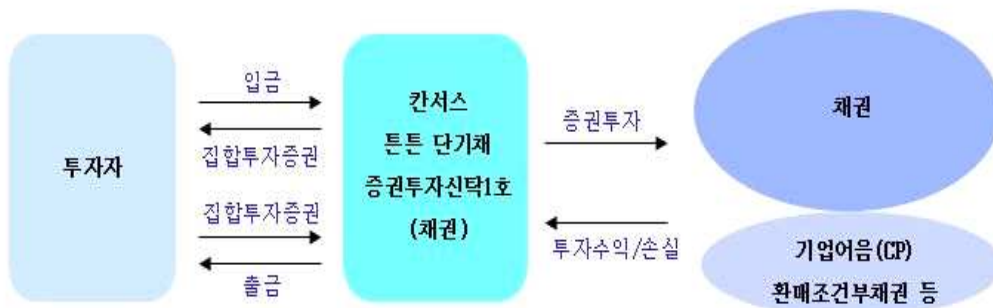
- ① 당해 펀드의 운용성과가 반드시 시장성과와 연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

-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목표수익률 달성을 목적으로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 조절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으로서 수익자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아래 세 경우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서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칸서스 튠튼채권 탄탄공모주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현재 기준)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할 예정이며,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하거나 신탁계약서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칸서스 튠튼채권 탄탄공모주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현재 기준)으로 전환(합병, 모자형 전환 등)할 예정입니다.

- 1)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 2)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가. 일반위험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종류 | 세부구분 | 주요내용 |
|---------|-----------|--|
| 투자신탁 위험 | 투자원금손실 위험 | <p>관련법령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p> <p>※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p> |
| 개별위험 | 발행회사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채권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시장위험 | 이자율변동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채산을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채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회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원본 손실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부도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권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 | 신용등급 하락위험 |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 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해지위험 | 투자신탁 해지위험 |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종류 | 세부구분 | 주요내용 |
|------|----------|--|
| 신용위험 | 거래상대방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생한 회사 또는 계약 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신탁 | 투자원금손실 | 관련법령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

| | | |
|----|----|---|
| 위험 | 위험 | <p>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p> <p>※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p> |
|----|----|---|

다. 기타 투자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이 투자신탁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 의사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종류 | 세부구분 | 주요내용 |
|------------|---|--|
| 환매위험 | 유동성위험 (환매연기위험) | <p>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은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 | 환매청구시 위험 | <p>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자는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p> <p>특히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금액이 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 운용실무 위험 | 기준가격오류 위험 | <p>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p> |
| | 규모변동 위험 | <p>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p> |
| | 장부가과 시가와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 <p>장부가가격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p> |
| 운용위험 | 펀드규모위험 | <p>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p> |

| | | |
|---------|------------------------|--|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자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의 미래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세금관련 위험 | 과세제도 변경위험 |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수익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
| | 과세 위험 |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자산으로부터의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해지 위험 | 투자신탁 해지위험 |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 수익 및 채권 가격 상승효과(자본차익)를 기대하면서 낮은 수준의 손실위험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개인, 법인에게 알맞은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시중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낮은 수준의 시장변동 및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금액,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으로서 수익자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수익률변동성이 0.4391%로 투자위험등급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 위험등급분류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구간]

| 등급 | 1 (매우높은위험) | 2 (높은위험) | 3 (다소높은위험) | 4 (보통위험) | 5 (낮은위험) | 6 (매우낮은위험) |
|---------|---------------|-------------|---------------|-------------|-------------|---------------|
| 수익률 변동성 | 25%초과 | 25%이하 | 15%이하 | 10%이하 | 5%이하 | 0.5%이하 |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이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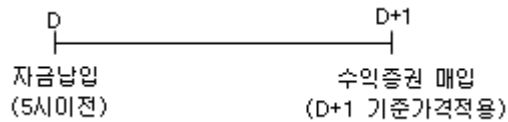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 구분 |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
|-----------------------|---|
| 1.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제한없음 |
| 2.수수료선취-온라인(A-e) | 온라인 가입자 |
| 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제한없음 |
| 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온라인 가입자 |
| 5.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나.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
| 6.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합니다) 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 최초 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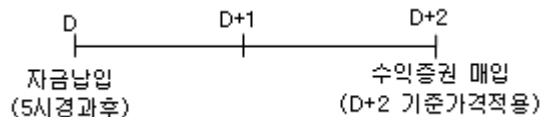
| | |
|-----------------------------------|---|
| 7.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50이상 적격투자자(C-i) |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 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100억이상 적격투자자(C-i2) |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 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
| 10.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 퇴직연금 온라인 가입자 |
| 1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12.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 | 개인연금 온라인 가입자 |
| 13.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IFA, FA의 자문을 받거나 판매사의 권유 없이 직접 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한 자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금전을 납입한 경우 : 금전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금전을 납입한 경우 : 금전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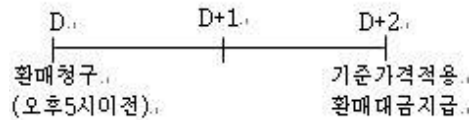
(1)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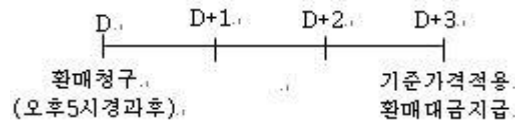
합니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 및 환매업무

-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법시행령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이 항에서 "해산등"이라 합니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4)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합니다)에는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②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익자에

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범위에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에서 소유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6)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7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법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법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 내 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종류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 산정주기 | 매일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 공시장소 | 기준가격의 공시는 집합투자업자(http://www.consu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

※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투자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비상장채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은 평가기준일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 |

| | |
|----------------|---|
| | 표하는 가격(외국의 경우 가격계산시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 |
| 국내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기타 공정가격이 없는 자산 |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관리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 | 가입자격 | 구분 |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 부과시기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제한없음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25% | 매입시 |
| |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00% | 환매시 |
| | | 전환수수료 | 0.00% | 전환시 |
| | | 환매수수료 | - | 환매시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온라인 가입자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14% | 매입시 |
| |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00% | 환매시 |
| | | 전환수수료 | 0.00% | 전환시 |
| | | 환매수수료 | - | 환매시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제한없음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00% | 매입시 |
| |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00% | 환매시 |
| | | 전환수수료 | 0.00% | 전환시 |
| | | 환매수수료 | - | 환매시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온라인 가입자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00% | 매입시 |
| |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00% | 환매시 |
| | | 전환수수료 | 0.00% | 전환시 |
| | | 환매수수료 | - | 환매시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주1)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00% | 매입시 |
| |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00% | 환매시 |
| | | 전환수수료 | 0.00% | 전환시 |
| | | 환매수수료 | - | 환매시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주2)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00% | 매입시 |
| |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00% | 환매시 |
| | | 전환수수료 | 0.00% | 전환시 |
| | | 환매수수료 | - | 환매시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50이상 적격투자자(C-i) |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00% | 매입시 |
| |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00% | 환매시 |
| | | 전환수수료 | 0.00% | 전환시 |
| | | 환매수수료 | - | 환매시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최초 납입금액이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00% | 매입시 |
| |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00% | 환매시 |

| | | | | |
|--------------------------------|-----------------------------------|---------|-------------|-----|
| 100억이상 적격투자자(C-i2) | 100억원 이상인 자 | 전환수수료 | 0.00% | 전환시 |
| | | 환매수수료 | - | 환매시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00% | 매입시 |
| |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00% | 환매시 |
| | | 전환수수료 | 0.00% | 전환시 |
| | | 환매수수료 | - | 환매시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Pe) | 퇴직연금 온라인 가입자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00% | 매입시 |
| |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00% | 환매시 |
| | | 전환수수료 | 0.00% | 전환시 |
| | | 환매수수료 | - | 환매시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1) | 주3)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00% | 매입시 |
| |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00% | 환매시 |
| | | 전환수수료 | 0.00% | 전환시 |
| | | 환매수수료 | - | 환매시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P1e) | 개인연금 온라인 가입자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00% | 매입시 |
| |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00% | 환매시 |
| | | 전환수수료 | 0.00% | 전환시 |
| | | 환매수수료 | - | 환매시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 주 4)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16% | 매입시 |
| |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00% | 환매시 |
| | | 전환수수료 | 0.00% | 전환시 |
| | | 환매수수료 | - | 환매시 |

주1)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나.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주2)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합니다)

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 최초 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주3)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주4)IFA . FA의 자문을 받거나 판매사의 권유 없이 직접 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한 자

※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명칭) | 부과비율 (연간,%) | | | | | | | | | |
|-------------------|----------------------|----------------|----------------|----------------------------|-------------|---------------------------------|----------|----------------|---|----------------|
|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 판매 회사 보수 | 신탁 업자 보수 |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 총 보 수 | 동 종 유 형 총 보 수 | 기타 비용 | 총보 수· 비용 | 합성 총보수 ·비용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 증권 거래 비용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0.0900 | 0.0500 | 0.0100 | 0.0100 | 0.16 | 0.25 | 0.0138 | 0.1738 | 0.1738 | 0.0078 |
| 수수료선취- | 0.0900 | 0.0300 | 0.0100 | 0.0100 | 0.14 | 0.22 | 0.0137 | 0.1537 | 0.1537 | 0.0092 |

| | | | | | | | | | | |
|-----------------------------------|--------|--------|--------|--------|------|------|--------|--------|--------|--------|
| 온라인(A-e)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0.0900 | 0.2500 | 0.0100 | 0.0100 | 0.36 | 0.35 | 0.0137 | 0.3737 | 0.3737 | 0.008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0.0900 | 0.1200 | 0.0100 | 0.0100 | 0.23 | 0.24 | 0.0136 | 0.2436 | 0.2436 | 0.008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0.0900 | 0.0100 | 0.0100 | 0.0100 | 0.12 | | 0.0138 | 0.1338 | 0.1338 | 0.018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100억이상 적격투자자(C-i2) | 0.0900 | 0.0300 | 0.0100 | 0.0100 | 0.14 | | 0.0138 | 0.1538 | 0.1538 | 0.006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 0.0900 | 0.1000 | 0.0100 | 0.0100 | 0.21 | | 0.0113 | 0.2213 | 0.2213 | 0.008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 0.0900 | 0.0550 | 0.0100 | 0.0100 | 0.17 | | 0.0137 | 0.1787 | 0.1787 | 0.0087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 | 0.0900 | 0.1100 | 0.0100 | 0.0100 | 0.22 | | 0.0135 | 0.2335 | 0.2335 | 0.0094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 (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등
- 주2)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 | |
|----------------|-------|
| 구분 | 금액 |
|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 3,163 |
| 발행분담금 | 0 |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전인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이 설정된 후에는 발생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 주4) 미설정된 클래스의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은 설정된 클래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5) 모투자신탁의 보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비용을 제외한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비용등은 이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6)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7)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피투자 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 및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유사한 펀드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구분 | | 투자기간 | | | | |
|--------------------------------|------------------|------|-----|-----|-----|------|
| | | 1년후 | 2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43 | 61 | 81 | 123 | 248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43 | 61 | 81 | 123 | 248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30 | 46 | 64 | 101 | 212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30 | 46 | 64 | 101 | 21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38 | 79 | 121 | 212 | 482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38 | 79 | 121 | 212 | 482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25 | 51 | 79 | 138 | 314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25 | 51 | 79 | 138 | 31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4 | 28 | 43 | 76 | 172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4 | 28 | 43 | 76 | 17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100억이상 적격투자자(C-i2)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6 | 32 | 50 | 87 | 198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6 | 32 | 50 | 87 | 19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23 | 47 | 72 | 125 | 285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23 | 47 | 72 | 125 | 28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8 | 38 | 58 | 101 | 230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8 | 38 | 58 | 101 | 230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24 | 49 | 75 | 132 | 301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24 | 49 | 75 | 132 | 301 |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각각 납입금액의 0.25%, 0.14% 및 0.16%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판매사별 판매수수료가 차등화되면 예상되는 총보수·비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 사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결산·분배 할 때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2)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이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 ①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신탁계약서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3) 상환금 등의 지급

-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1)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2)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외국납부세액×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증권의 과표기준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분 | 주요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 수령요건 |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
| 분리과세한도 |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
| 연금외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 해지가산세 | 없음 |
| 부득이한 연금의 수령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계좌승계 |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세액공제(2015.1.1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6기(2022.07.12 - 2023.07.11) | 선진회계법인 | 적정 |
| 제5기(2021.07.12 - 2022.07.11) | 선진회계법인 | 적정 |
| 제4기(2020.07.12 - 2021.07.11) | 선진회계법인 | 적정 |
| 제3기(2019.07.12 - 2020.07.11) | 선진회계법인 | 적정 |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대차대조표 | | | |
|----------|----------------|----------------|-----------------|
| 항 목 | 제 6기 | 제 5기 | 제 4기 |
| | (2023.07.11) | (2022.07.11) | (2021.07.11) |
| 운용자산 | 32,955,011,620 | 51,961,537,073 | 106,942,414,517 |
| 증권 | 27,814,048,200 | 50,158,110,644 | 96,887,200,593 |
| 파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5,140,963,420 | 1,803,426,429 | 10,055,213,924 |
| 기타 운용자산 | 0 | 0 | 0 |
| 기타자산 | 1,136,744,811 | 228,287,767 | 411,627,248 |
| 자산총계 | 34,091,756,431 | 52,189,824,840 | 107,354,041,765 |
| 운용부채 | 0 | 8,500,000,000 | 14,000,000,000 |
| 기타부채 | 3,553,524 | 3,193,950 | 4,842,393 |
| 부채총계 | 3,553,524 | 8,503,193,950 | 14,004,842,393 |
| 원본 | 32,320,825,681 | 43,216,556,728 | 91,013,323,509 |
| 수익조정금 | -111,557,825 | -165,107,486 | -94,820,390 |
| 이익잉여금 | 1,878,935,051 | 635,181,648 | 2,430,696,253 |
| 자본총계 | 34,088,202,907 | 43,686,630,890 | 93,349,199,372 |

나.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 6기 | 제 5기 | 제 4기 |
| | (2022.07.12 - 2023.07.11) | (2021.07.12 - 2022.07.11) | (2020.07.12 - 2021.07.11) |
| 운용수익 | 1,726,965,841 | 839,271,692 | 2,204,804,760 |
| 이자수익 | 1,493,932,334 | 1,542,970,158 | 2,441,544,871 |
| 배당수익 | 0 | 0 | 0 |
| 매매/평가차익(손) | 233,033,507 | -703,698,466 | -236,740,111 |
| 기타수익 | 56,404,908 | 161,232 | 161,233 |
| 운용비용 | -68,499,714 | -177,971,147 | -150,410,081 |
| 관련회사 보수 | 0 | 0 | 0 |
| 매매수수료 | -68,499,714 | -177,971,147 | -150,410,081 |
| 기타비용 | -4,165,347 | -6,730,520 | -11,770,790 |
| 당기순이익 | 1,710,705,688 | 654,731,257 | 2,042,785,122 |
| 매매회전율 | 0.00 | 0.00 | 0.00 |

주1) 위 재무제표는 운용펀드를 대상이며,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2)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해당투자신탁은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매매회전율은 0%입니다.

주3) 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좌,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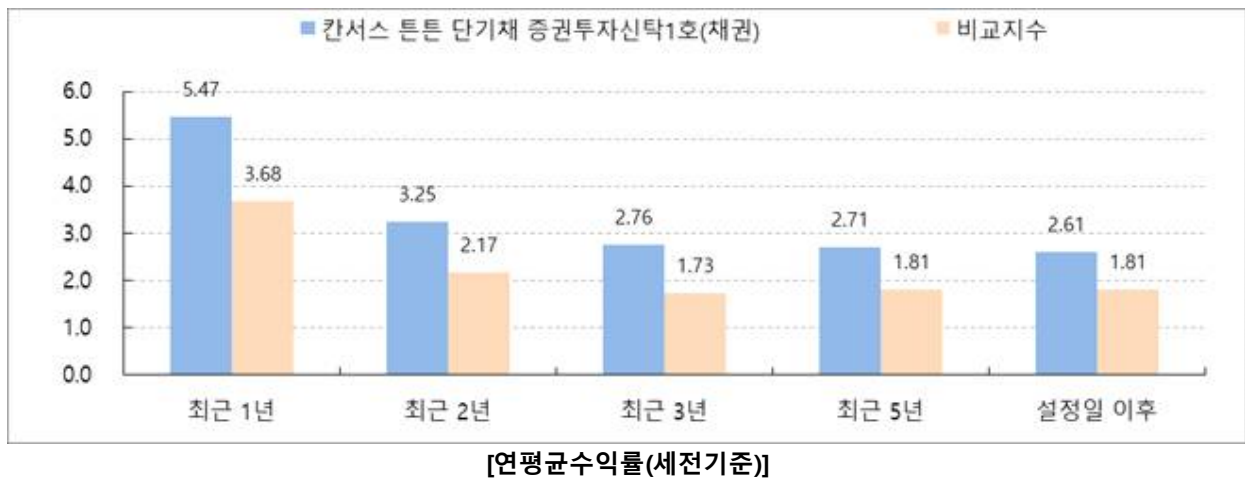
| 클래스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 펀드 전체 | 6기 | 432.17 | 432.17 | 1,717.31 | 1,758.02 | 1,826.27 | 1,868.66 | 323.21 | 323.21 |
| | 5기 | 910.13 | 910.13 | 492.30 | 493.57 | 970.27 | 972.98 | 432.17 | 432.17 |
| | 4기 | 719.40 | 725.02 | 1,474.00 | 1,499.48 | 1,283.27 | 1,308.88 | 910.13 | 910.13 |
| A | 6기 | 323.57 | 323.74 | 35.51 | 35.97 | 292.76 | 295.43 | 66.31 | 66.35 |
| | 5기 | 601.51 | 601.83 | 193.76 | 193.84 | 471.71 | 472.66 | 323.57 | 323.74 |
| | 4기 | 577.38 | 590.00 | 490.51 | 505.71 | 466.38 | 481.28 | 601.51 | 601.83 |

| | | | | | | | | | |
|-------|----|--------|--------|--------|--------|--------|--------|--------|--------|
| A-e | 6기 | 28.03 | 28.03 | 871.24 | 886.28 | 835.09 | 851.34 | 64.18 | 64.18 |
| | 5기 | 16.89 | 16.89 | 130.33 | 131.13 | 119.19 | 119.84 | 28.03 | 28.03 |
| | 4기 | 4.62 | 4.72 | 25.35 | 26.17 | 13.07 | 13.50 | 16.89 | 16.89 |
| C | 6기 | 70.14 | 70.51 | 24.56 | 25.44 | 44.69 | 45.94 | 50.01 | 50.28 |
| | 5기 | 169.13 | 170.01 | 114.74 | 115.37 | 213.72 | 215.35 | 70.14 | 70.51 |
| | 4기 | 119.51 | 122.52 | 302.73 | 311.89 | 253.11 | 261.40 | 169.13 | 170.01 |
| C-e | 6기 | 2.67 | 2.67 | 173.58 | 177.19 | 138.03 | 140.56 | 38.22 | 38.22 |
| | 5기 | 11.30 | 11.30 | 14.29 | 14.33 | 22.92 | 22.95 | 2.67 | 2.67 |
| | 4기 | 5.22 | 5.36 | 32.99 | 34.23 | 26.91 | 27.94 | 11.30 | 11.30 |
| C-p | 6기 | 0.07 | 0.07 | 0.08 | 0.08 | 0.03 | 0.03 | 0.13 | 0.13 |
| | 5기 | 0.02 | 0.02 | 0.05 | 0.05 | 0.00 | 0.00 | 0.07 | 0.07 |
| | 4기 | 0.00 | 0.00 | 0.02 | 0.02 | 0.00 | 0.00 | 0.02 | 0.02 |
| C-pe | 6기 | 7.45 | 7.45 | 436.38 | 452.28 | 351.62 | 364.86 | 92.21 | 92.21 |
| | 5기 | 1.97 | 1.97 | 11.46 | 11.51 | 5.97 | 6.00 | 7.45 | 7.45 |
| | 4기 | 0.02 | 0.02 | 2.62 | 2.66 | 0.67 | 0.68 | 1.97 | 1.97 |
| C-p1e | 6기 | 0.49 | 0.48 | 25.99 | 26.08 | 13.71 | 13.83 | 12.78 | 12.78 |
| | 5기 | 1.26 | 1.22 | 2.93 | 2.84 | 3.70 | 3.59 | 0.49 | 0.48 |
| | 4기 | 0.11 | 0.11 | 3.05 | 2.95 | 1.90 | 1.84 | 1.26 | 1.22 |

주1) 설정 및 환매현황이 없는 클래스는 생략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

| 기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설정일 이후 |
|-----------|---------------------------|---------------------------|---------------------------|---------------------------|
| | 2022.07.12~ 2023.07.11 | 2021.07.12~ 2023.07.11 | 2020.07.12~ 2023.07.11 | 2017.07.12~ 2023.07.11 |
| 펀드전체 | 5.47 | 3.25 | 2.76 | 2.61 |
| 비교지수 | 3.68 | 2.17 | 1.73 | 1.81 |
| 수익률변동성(%) | 0.51 | 0.49 | 0.43 | 0.36 |
| A | 5.30 | 3.09 | 2.59 | 2.45 |
| A-e | 5.32 | 3.11 | 2.61 | 2.47 |
| C | 5.09 | 2.88 | 2.39 | 2.24 |
| C-e | 5.22 | 3.02 | 2.52 | 2.38 |
| C-p | 5.25 | 3.04 | - | 2.72 |
| C-pe | 5.29 | 3.08 | 2.59 | 2.56 |

| | | | | |
|-------|------|------|---|------|
| C-p1e | 5.24 | 3.03 | - | 0.88 |
|-------|------|------|---|------|

주1)비교지수: **KIS 종합채권지수(3M~1Y)95% + KIS Call지수5%**

주2)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연도별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 기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 2022.07.12~ 2023.07.11 | 2021.07.12~ 2022.07.11 | 2020.07.12~ 2021.07.11 | 2019.07.12~ 2020.07.11 | 2018.07.12~ 2019.07.11 |
| 펀드전체 | 5.47 | 1.09 | 1.77 | 2.34 | 2.92 |
| 비교지수 | 3.68 | 0.69 | 0.84 | 1.79 | 2.11 |
| A | 5.30 | 0.92 | 1.61 | 2.17 | 2.76 |
| A-e | 5.32 | 0.94 | 1.63 | 2.19 | 2.78 |
| C | 5.09 | 0.72 | 1.40 | 1.97 | 2.55 |
| C-e | 5.22 | 0.85 | 1.54 | 2.10 | 2.69 |
| C-p | 5.25 | 0.88 | - | - | - |
| C-pe | 5.29 | 0.92 | 1.61 | 1.55 | - |
| C-p1e | 5.24 | 0.86 | -3.44 | - | - |

주1)비교지수: **KIS 종합채권지수(3M~1Y)95% + KIS Call지수5%**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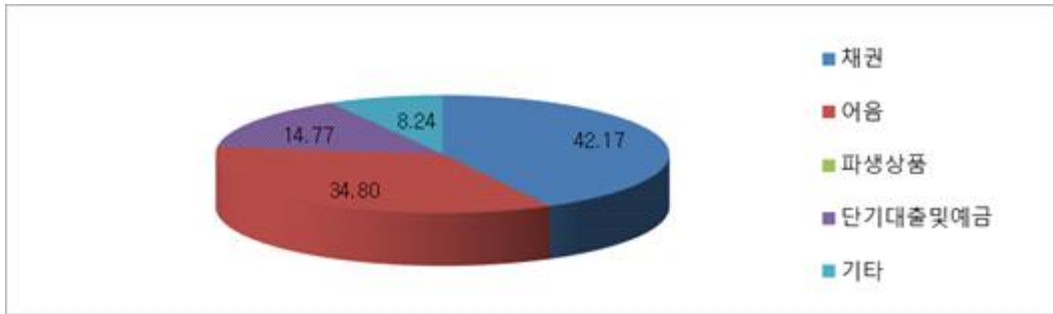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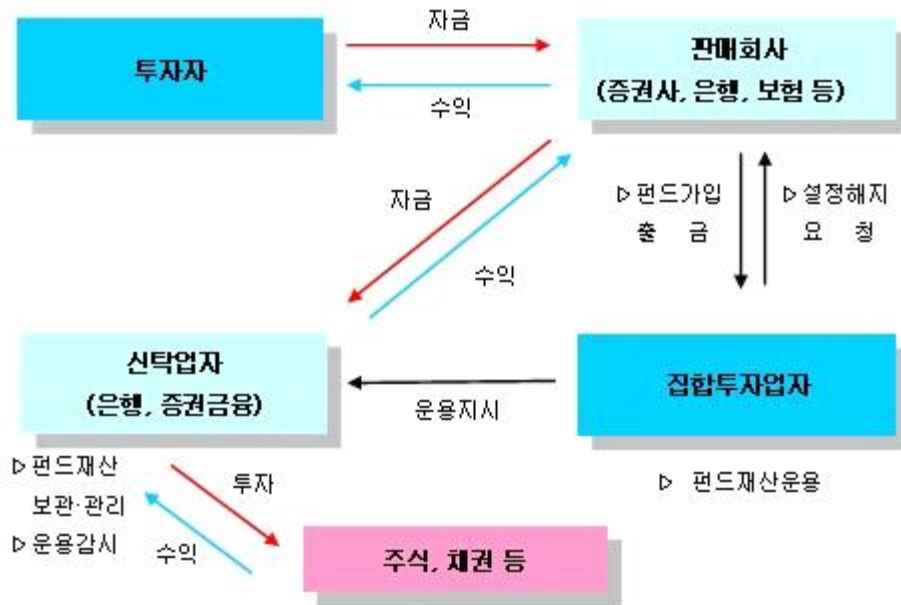
(2023. 07. 11기준, 단위:억원,%)

| 동화별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및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원화 | 0.0 | 143.8 | 118.7 | 0.0 | 0.0 | 0.0 | 0.0 | 0.0 | 0.0 | 50.4 | 28.1 | 340.9 |
| 합계 | (0.00) | (42.17) | (34.80) | (0.00) | (0.01) | (0.00) | (0.00) | (0.00) | (0.00) | (14.77) | (8.24) | (100.00) |

주1)0내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회사명 | 주소 및 연락처 |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
| 칸서스자산운용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02-2077-5000) | www.consus.co.kr |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및 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2)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및 연대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

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 요약 대차대조표 | | | 요약 손익계산서 | | |
|---------------|------------|------------|-------------|------------|------------|
| 항목 | '22.12.31' | '21.12.31' | 항목 | '22.12.31' | '21.12.31' |
| 유형자산 | 369 | 835 | 영업수익 | 13,012 | 12,192 |
| 기타자산 | 5,759 | 3,995 | 영업비용 | 13,347 | 11,969 |
| 자산총계 | 36,153 | 18,309 | 영업이익 | (335) | 223 |
| 예수부채 | 0.3 | 0.2 | 영업외수익 | 606 | 5,828 |
| 기타부채 | 5,964 | 5,689 | 영업외비용 | 157 | 3,514 |
| 부채총계 | 21,626 | 5,690 | 경상이익 | | - |
| 자본금 | 16,795 | 15,195 | 특별손익 | | - |
| 자본/이익잉여금 | 386 | -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114 | 2,537 |
| 자본조정 | (750) | (687) | 법인세비용 | 45 | (0.01) |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142) | (58) | 당기순이익 | 38 | 2,537 |
| 자본총계 | 14,526 | 12,619 | - | | |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2022.12.31/단위:억원)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 | | | | | | | 사모 투자 전문 회사 (PEF) | 투자 일임 | 총계 |
|----------|--------|-----|-------|-----|----------|-------|----------|----------|----------|-------------------------------|----------|--------|
| | 증권 | | | | | 부동산 | 특별 자산 | 혼합 자산 | 단기 금융 | | | |
| 형태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재간접 | 파생 상품 | | | | | | | |
| 유형 | | | | | | | | | | | | |
| 운용 자산 | 474 | 860 | 2,203 | 712 | 29 | 7,577 | 25,501 | 865 | - | 13,448 | - | 51,669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우리은행 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 02-2002-3000 |
|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wooribank.com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신탁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 및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행위 또는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합니다.

(2) 선관주의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및 연대책임

①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우리펀드서비스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 우리금융상암센터 3층 ☎ 02.3151.3500 |
|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http://www.woorifs.co.kr/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연대책임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 | NICE피앤아이 | KIS채권평가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 02-782-10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02-3215-1450 |
|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koreabp.co.kr | www.nicepni.co.kr | www.bond.co.kr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2) 연대책임

이 투자신탁의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수익자총회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⑤상법 제36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 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

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봅니다.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⑪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2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①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③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합니다.

마. 재판관할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수수료와 그 비중

□ 결산서류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의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②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기준일"이라 합니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합니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계약기간의 종료·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서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신탁계약서 제21조제4항 각 호의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사유발생일부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

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2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7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 방법 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구분 |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 | | | | | |
|---------------------|---------------|--------------|-------------|---------------|--------------|------------------------|------------------|-----------|
|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 | | | | | | |
| | 평가항목 | 세미나, 기업탐방 | 조사자료 의 질 | 정보 및 리서치능력 | 중계 수수료 | 주문체결 능력 | 중개서비스 문제해결/기타 | 합계/ 순위 |
| | 항목가중치 | 30% | 10% | 30% | 5% | 15% | 10% | 100% |
| 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 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 | | | | | | |
| | 평가항목 | 조사자료 의 질 | 거래체결 능력 | 거래 용이성 | 시장판단 대처능력 | 기타서비스(성실성, 당사와의 관계) | 세미나 | 합계/ 순위 |
| | 배점 | 15% | 20% | 15% | 15% | 15% | 20% | 100% |

* 각 평가항목은 각각 1~5점으로 평가
 * 각 항목별 점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등급구분은 상위 합산점수기준으로 S~C 등급은 각각 4개사로 하며, 나머지는 D등급
 * 각 등급별 중개회사의 비율은 S(각 11%), A(각 7%), B(각 6%), C(각 5%), D(각 3%)를 원칙으로 함

* 각 평가항목은 0~평가항목별 배점으로 평가
 *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 합산기준 기준으로 상위 10개사를 채권 거래시 중개회사로 선정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 : 펀드용어의 정리

| |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 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 |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투자신탁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특별자산집합기구가 아닌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금전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익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수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금전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수익자총회 | 신탁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서에 따릅니다.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수익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해 펀드의 비교지수 : KIS 종합채권지수(3M~1Y)95% + KIS Call지수5%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